

가입제한 없으나 이해부족으로 실용화 안되고 있다.

□ 정리/김동진 기자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 회가 변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보다 향상되어 가는 반면 새롭고 보다 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도로 19세기 이후부터 생명 보험을 시발로 각종 보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험이란 위험과 재난에 대비한 상부상조의 제도로써 그 원 뜻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각출한 보험료에 의해서 준비금을 형성하여 구성원중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입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보험에는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되고가입대상에 따라 재물에 관한 보험에 속한다.

양계업은 과거와는 달리 자동화, 대형화로 인해 계사가 현대화되어 화재 등 재난이 발

생했을 경우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계사 건물은 아직도 가건물이 존재하고 보온덮개 등 인화성 물질로 덮여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사가 완전 전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최신 자동화 시설을 겸비한 현대식 계사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하여 양계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

현재 화재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현대식 계사의 경우는 일부 보험에 가입된 곳도 있지만 거의 전무후무한 형편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양계농가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측에서는 일반 건축물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형편이다.

보험관계자에 따르면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계약 인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양계장은 계사시설의 낙후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재발생시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크기



△파이프하우스나 가건물은 화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사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때문에 화재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예는 가구점이나 섬유 공장과 같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곳도 화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나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특수 건물은 330평 이상, 일반건물은 6층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으나 축사(양계장)는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보험회사측은 물론 사양가들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양계장은 건물구조상 4급(목조, 파이프, 가건물

등)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측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건물의 화재는 우연적인 화재라도 대량관찰의 결과 2/100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알려짐에 따라 화재보험에 성립되는데 양계장도 이 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계사시설이 완벽하게 건축되고 있어 보험회사측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계사내의 모든 구성요소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살아있는 생명체, 즉 닭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동물원에서 일부 수입된 희귀동물에 한해 동물

보험료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지
만 일반 가축에는 보험제도의
개발이 미흡하고 가격산정이
힘들며 보험료 지급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조건이 까다로울 뿐 가
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가
입을 원하는 희망자가 보험회
사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
보험의 목적(대상물)에 대한
위험측정을 거쳐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
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
약서에 정확히 고지를 하게끔
의무화 되어있다.

보험사고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
시 약정이 없는 한 보상을 받
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당시
보험물 대상을 청약서에 정확
히 기재하는 것은 위험측정,
인수여부 결정,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띤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인수가
결정되면 보험계약이 확정되는
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가입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손해보험은 계약기간이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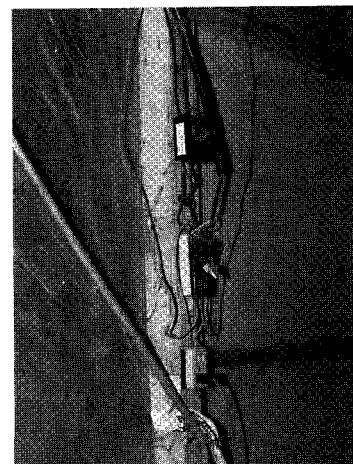
1년이며, 이중 화재보험의 경
우 3, 5년이 보통인데 가입자
는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
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하는
위험과 그 양에 따라 계산 ·
적용되는데 계사의 경우는 일
반 건축물에 준하여 유시하게
적용되고 케이지 등 기자재는
요율산정 기준에 의해 계산되
어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
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
도록 하고 발생사실을 신속히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는데 미
미한 사고는 보험회사측에서
직접 조사하지만 건축물 등 기
계설비의 경우 공정하고 정확
한 손해사정을 위해 전문 손해
사정인이 담당하게 된다.

손해사정인은 현장조사를 실
시하여 손해발생 사실확인, 보
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
정여부를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
면 손해의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계울리 하여 손해가 확대되면
보험료 산정에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단 천재지변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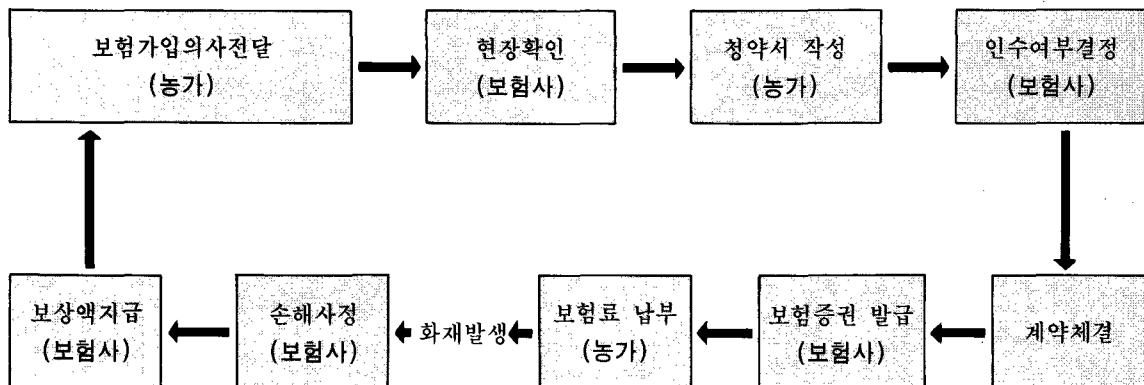


△화재는 전기시설 뿐 아닌 계사
어느 곳에도 잔존해 있음을 잊
어선 않는다.

한 화재의 경우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산정은 동산물을 제
외한 모든 경우에 보통 {손해
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80%)}로 적용하는데 보험금
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
사자와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정해놓은 최고한도액이며, 보
험가액은 보험가입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 한
도액을 의미한다.

보험요율산정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의하여 이득
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가령 화재발생 결과 사고직전
의 재산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진다면 일부러 방화를 우



〈그림1〉 화재보험가입 절차 및 보상액 지급 절차

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업은 날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축사시설을 외면 만 할게 아니라 양계장 시설이 과거 어느때보다 개선되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계시설에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계농가가 불의의 화재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적 피해차원에서 축사시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이에대한

지원정책을 꾀나감이 절실하며 생산자들은 시설개선으로 보험가입 조건을 충분히 구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

미등록 부화장 및 종계장 고발센타 안내

- 대상 : ○미등록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588-7651, Fax : 588-7655